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6
----------	--------

제안일자 : 2019.12.18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공청회 개최 결과 및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을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단위를 5년으로 함(안 제4조제1항)
-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 각 호)
-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중전 제8조)제6호 및 제7호)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신설함(안 제8조 각 항)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비용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
-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조정함(안 제10조(중전 제12조)제2항)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고하고 집합건물 소유자 및”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하여”를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로, “매년”을 “5년 단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재원 및 재원 마련”을 “재원과 재원마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관리비 절감 등)”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비 절감을”을 “건

전한 관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관리비 절감”을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관리비 절감”을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으로 한다.

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지원
4.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에 따른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①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②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③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조정

제7조(중전의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 및 홍보”를 “교육·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축 및 운영”을 “구축·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안내
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
6.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7.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8. 그 밖에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2조)제2항제1호 중 “접수 및 조사”를 “접수, 상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를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실태조사”를 “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집합건물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수용과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6.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7.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중전의 제13조) 중 “소유자 등 및”을 “소유자등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4조) 중 “수립·시행 및”을 “수립·시행과”로, “자치구·공공기관”을 “자치구·공공기관,”으로, “단체 및”을 “단체,”로,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u>제고하고 집합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u>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책무)</p> <p>① ~ ② (생략)</p> <p>② <u>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p> <p>① 시장은 <u>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편의를 증진</u></p>	<p>제1조(목적) ----- ----- <u>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u>----- ----- ----- -----</p> <p>제3조(책무)</p> <p>① ~ ② (제정안과 같음)</p> <p><삭 제></p> <p>③ <u>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p> <p>① ----- <u>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u> -----</p>

조 례 안	수 정 안
<p><u>하여</u> 소유자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하여 <u>매년</u>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	<p>----- ----- <u>5년 단위로</u> ----- ----- -----</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 2. (생략)</p> <p>3. 사업추진을 위한 <u>재원 및 재원 마련</u> 방안에 관한 사항</p> <p>4. <u>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u></p> <p>5. ~ 6. (생략)</p>	<p>② ----- -----</p> <p>1. ~ 2. (제정안과 같음)</p> <p>3. ----- <u>재원과 재원마련</u> -----</p> <p><삭 제></p> <p>4. ~ 5.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관리비 절감 등) 시장은 집합건물의 <u>관리비 절감</u>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p>1. <u>관리비 절감</u>에 관한 연구·조사</p> <p>2. <u>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u></p>	<p>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 ----- <u>건전한 관리를</u> ----- ----- -----</p> <p>1. <u>집합건물의 건전관리</u>----- -----</p> <p>2. <u>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u></p>

조 례 안	수 정 안
<p align="center"><u>3.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u></p>	<p align="center"><u>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지원</u></p>
<p align="right"><u><신 설></u></p>	<p align="center"><u>4.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제·개정</u>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u>관리비 절감</u>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5. -----<u>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u>-----</p> <p align="center">---</p>
<p>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p> <p>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align="right"><u><후단 신설></u></p>	<p>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p> <p>① -----</p> <p align="center">-----</p> <p align="center">-----</p> <p align="center">-----</p> <p align="center">-----</p> <p align="center">-----</p> <p align="center">-----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p> <p>시장은 <u>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복도, 계단 등의 공용부분에서의 흡연 방지 및 갈등 해결</u>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p align="center"><u><삭 제></u></p>

조 례 안	수 정 안
<p>1. <u>소유자등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생활수칙, 자치조직 구성·운영 등에 관한 준거 마련 지원</u></p> <p>2. <u>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분쟁 관련 자문·상담·조정 등 지원</u></p> <p>3. <u>소유자등 및 관리단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교육 및 홍보 등 지원</u></p> <p>4. <u>그 밖에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u>제8조(교육·홍보) (생략)</u></p>	<p><u>제7조(교육·홍보) (제정안과 같음)</u></p>
<p>1. <u>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안내</u></p> <p>2. <u>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 및 홍보</u></p> <p>3. <u>공동캠페인 및 학술세미나 개최</u></p> <p>4. <u>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u></p>	<p>1. <u>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안내</u></p> <p>2. ----- <u>교육·홍보</u></p> <p>3. <u>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u></p> <p>4. ----- <u>구축·운영</u></p>

조 례 안	수 정 안
<p>5. (생략)</p> <p>6. <u>그 밖에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 <신 설></p> <p> <신 설></p> <p> <신 설></p>	<p>5. (제정안과 같음)</p> <p>6. <u>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u></p> <p>7. <u>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u></p> <p>8. <u>그 밖에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u>제8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u></p> <p> ① <u>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u></p> <p> ② <u>「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u></p> <p> ③ <u>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조정</u></p>
<p><u>제9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u></p> <p> ① <u>시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시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제9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u></p> <p> ① <u>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u></p>

조 례 안	수 정 안
<p>② <u>조정위원회는 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을 심의·조정한다.</u></p> <p>③ <u>법 제52조의3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④ <u>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⑤ <u>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⑥ <u>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u></p>	<p><u>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u></p>

조 례 안	수 정 안
<p><u>회를 둘 수 있다.</u></p> <p><u>⑦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⑧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u></p> <p><u>제10조(조정 비용)</u></p> <p><u>① 법 제52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지원할 수 있다.</u></p>	<p><u>〈삭 제〉</u></p>

조 례 안	수 정 안
<p><u>③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u> <u>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u> <u>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u> <u>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제</u> <u>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1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u> <u>비용 지원)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u> <u>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u> <u>합건물 관리 관련 연구용역 및 시</u> <u>범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u> <u>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u> <u>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u> <u>있다.</u></p>	<p><u><삭 제></u></p>
<p><u>제12조(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u> <u>치·운영)</u></p> <p>① (생략)</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p> <p>1. 민원의 <u>접수 및 조사</u>에 관한 사항</p> <p>2. <u>관리비 적정여부 조사</u>에 관 한 사항</p>	<p><u>제10조(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u> <u>치·운영)</u></p> <p>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p> <p>1. -----<u>접수, 상담</u>----- ---</p> <p>2. <u>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u> <u>성, 운영, 지원</u>-----</p>

조 례 안	수 정 안
<p>3. <u>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p>	<p>3. <u>집합건물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u></p>
<p>4. 집합건물 <u>실태조사</u>에 관한 사항</p>	<p>4. ----- <u>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홍보</u>-----</p>
<p>5. <u>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u></p>	<p>5. <u>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수용과 이행확인</u>에 관한 사항</p>
<p>6. <u>집합건물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 감사 지원</u></p>	<p>6. <u>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u></p>
<p>7. <u>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u></p>	<p>7. <u>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u></p>
<p>8. <u>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u></p>	<p>〈삭 제〉</p>
<p>9. <u>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u></p>	<p>〈삭 제〉</p>
<p><u>제13조(상담실 설치·운영)</u> 시장은 <u>소유자 등 및 관리단, 관리위원회 등 집합건물 내 근로자</u>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u>제12조</u>에서 규정한 지원센터 내에 집합건물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u>제11조(상담실 설치·운영)</u> ----- <u>소유자등과</u>----- -----<u>노동자</u>----- ----- <u>제10조</u>----- ----- -----.</p>

조 례 안	수 정 안
<p><u>제14조(업무의 협조)</u> 시장은 종합 계획의 <u>수립·시행</u> 및 집합건물 건 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자치 구·공공기관</u> 법인 또는 <u>단체</u> 및 소유자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u>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u>제15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2조(업무의 협조)</u> ----- ----- <u>수립·시행과</u> ----- ----- <u>자치</u> <u>구·공공기관,</u> ----- <u>단체,</u> ----- ----- ----- <u>있다.</u></p> <p><u><삭 제></u></p>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 및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의 집합건물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시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 건전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지원
4.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에 따른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3. 그 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안내
2.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홍보
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
4.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운영
5.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7.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8. 그 밖에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 ①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②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③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조정

제9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집합건물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수용과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6.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7.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상담실 설치·운영) 시장은 소유자등과 관리단, 관리위원회 등 집합건물 내 노동자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한 지원 센터 내에 집합건물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